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용자의 긴급 조정신청 및 대체근로 허용 〉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38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용자의 긴급 조정신청 및 대체근로 허용 (안 제61조의3 신설)	2

I. 제안경위

2026년 6월 9일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권 보호를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 및 도급·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폭력·점거 등 쟁의행위로 보호될 수 없는 불법행위와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 수단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용자의 긴급 조정신청 및 대체근로 허용

(안 제61조의3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쟁의행위가 폭력행위에 해당하거나 공중 및 사업장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정·중재 기간에 한정하여 대체근로 및 도급·하도급을 허용하며,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61조의3(사용자의 긴급 조정신청 및 대체근로 허용 등)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u> <u>1. 쟁의행위가 제42조에 따른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u> <u>2. 해당 사업이 필수유지업무로서 그 업무의 유지·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u>

현행	개정안
	3. <u>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u> ② <u>제4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의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③ <u>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u> ④ <u>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 ⑤ <u>제4항에 따른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u> ⑥ <u>중앙노동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76조¹⁾ 상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행사하는 것으로, 공익적 관점에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제도임.

또한, 현행법 제43조²⁾는 근로자의 쟁의권 보호를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 및 도급·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즉, 근로자의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행위를 금지하되, 필수공익사업³⁾의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 12. 30.>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2. 30.>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 12. 30.>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대체인력 투입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중단 효과가 약화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쟁의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조항으로 이해됨.

그러나 현행법 체계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반면 사용자의 조업·영업의 자유를 제한하여 노사 간 교섭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폭력·점거 등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호되기 어려운 경우나 공중의 생명·신체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⁴⁾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 12. 30.>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4) 한국경영자총협회,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동정책이슈보고서 2023-01.

이에 개정안은 ①쟁의행위가 폭력행위 등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해당 사업이 필수유지업무⁶⁾로서 그 업무의 유지·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기간에 한정하여 현행법상 대체근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긴급조정 결정 권한과 별도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긴급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그 조정·중재 기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 또는 해당 업무의 도급·하도급을 허용함으로써, 쟁의행위로 인한 공중 및 사업장의 안전상 위험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 12. 30.]

등에 대응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확보하는 한편, 근로자의 쟁의권과 사용자의 조업권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사용자의 긴급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도록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하며, 중재회부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중재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조정·중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쟁의행위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다만, 개정안의 심사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상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익적 관점에서 결정하는 제도로서, 30일간 쟁의행위를 중지시키는 효력을 가짐.⁷⁾ 반면,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중재 기간 중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체근로 등을 허용하는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처럼 개정안은 현행 긴급조정 제도와 주체·요건 및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긴급조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법률 내 용어의 통일성과 체계적 일관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법상 긴급조정 및 개정안의 긴급조정 신청 비교 >

구분	현행법상 긴급조정	개정안의 긴급조정 신청
주체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
요건	쟁의행위가 ①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②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① 쟁의행위가 제42조에 따른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업이 필수유지업무로서 그 업무의 유지·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
효력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표일부터 30일간 쟁의행위 재개 금지	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기간 중 제43조제1항·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대체근로 및 도급·하도급 허용
조정 개시	긴급조정 결정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통고 →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정 개시	사용자의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정 개시
중재 회부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 통고일부터 15일 이내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둘째, 개정안의 긴급조정 신청요건⁸⁾은 개별 사업장 단위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유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국민경제 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긴급조정과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

현행 긴급조정은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강하게 제한하는 효과를 수반하므로 그 발동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행사 사례도 국민경제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쟁의행위 4건에 그쳤음.⁹⁾ 반면, 개정안은 ‘상당한 이유’, ‘유지·운영의 필요성’, ‘위험이 발생할 우려’ 등 해석의 여지가 있는 요건을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이 개시되고 그 조정·중재 기간 중 대체근로 및 도급·하도급이 허용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대체근로 제한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자유롭게 대체할 경우 쟁의행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일방의 신청에 따른 조정·중재 기간 중 대체근로 등을 허용하는 것이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과도하게 약화시킬 우려는

8) 안 제61조의3제1항 각 호

1. 쟁의행위가 제42조에 따른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해당 사업이 필수유지업무로서 그 업무의 유지·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실제 긴급조정은 국가적 과급력이 있는 쟁의에만 4차례 발동(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면서도 노동조합의 의견진술 등 절차적 권리의 보장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노사 간 균형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긴급조정 신청요건의 명확성, 대체근로 허용 범위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의 긴급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사유 중 일부는 현행 법상 이미 별도의 규율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긴급조정 신청 및 대체근로 허용 사유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⁰⁾ 판례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주체·목적·절차 및 수단·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음.¹¹⁾ 또한,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이미 허용되고 있고, 필수유지업무의 경우에도 노사 간 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쟁의행위 중 필요한 수준의 유지·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¹²⁾ 쟁의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10)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이를 행할 수 없으며(법 제42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9조제1호)

11)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절차,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함(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판결)

12)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저지·폐지·방해하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으며(법 제42조의2제2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9조제1호)

*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체

안전이나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라 규율할 수 있음.¹³⁾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유를 별도의 긴급조정 신청요건으로 규정하여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 측면은 없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넷째, 개정안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조정 신청 및 대체근로 허용 제도를 신설하면서도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도 시행에 따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새로운 절차의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 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긴급조정과 대체근로 제한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긴급조정 요건의 확대 및 대체근로 허용 여부는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사용자의 조업권 간 조화를 필요로 하는 사안인 만큼, 노사 의견수렴과 사회적 대화,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5

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음(법 제43조제4항)

13) 안전보호시설(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서 금지하며(법 제42조제2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91조)

참고 1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비교

구분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정의	공중의 <u>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u> 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u>미치는 영향</u> 이 큰 사업	<u>공익사업으로서</u>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u>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u> 하거나 국민경제를 <u>현저히 저해</u> 하고 그 <u>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u> 아니한 사업	<u>필수공익사업의 업무</u>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u>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u>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내용	1. <u>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u> 및 <u>항공운수사업</u> 2. <u>수도사업</u>, <u>전기사업</u>, <u>가스사업</u>, <u>석유정제사업</u> 및 <u>석유공급사업</u> 3. <u>공중위생사업</u>, <u>의료사업</u> 및 <u>혈액공급사업</u> 4. <u>은행</u> 및 <u>조폐사업</u> 5. <u>방송</u> 및 <u>통신사업</u>	1. <u>철도사업</u>, <u>도시철도사업</u> 및 <u>항공운수사업</u> 2. <u>수도사업</u>, <u>전기사업</u>, <u>가스사업</u>, <u>석유정제사업</u> 및 <u>석유공급사업</u> 3. <u>병원사업</u> 및 <u>혈액공급사업</u> 4. <u>한국은행사업</u> 5. <u>통신사업</u>	필수공익사업별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시행령 별표 1에 별도 규정
효과	- 노동쟁의 조정의 우선적 취급(제51조) - 조정기간 특례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제54조) - 공익사업 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 설치(제72조) - 긴급조정(제76조)	- 필수공익사업 중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제42조의2)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자 채용등 금지 적용 제외(제43조)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제42조의2)

참고 2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노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1)

1.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
 - 나.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 업무(정거장·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를 포함한다)
 - 다.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라.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마.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바.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 사. 선로점검·보수 업무
2.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 나. 승객 및 승무원과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
 - 다. 항공기 조종 업무
 - 라. 객실승무 업무
 - 마.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 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 사. 항공기의 정비[창정비(Depot Maintenance, 대규모 정비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여 수행하는 최상위 정비 단계)는 제외한다] 업무
 - 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또는 취항 국가의 요구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또는 보안 조치와 관련된 업무
 - 자.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업무
 - 차.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지상전원 공급 업무
 - 카. 항공기에 대한 제설·제빙 업무
 - 타. 승객 승하기 시설·차량 운전 업무
 - 파. 수하물·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 하. 「항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운영(관제를 포함한다)을 위한 업무
3. 수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취수·정수(소규모 자동화 정수설비를 포함한다)·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 나.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의 운영 업무
 - 다. 수도시설 긴급복구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정 기준이나 절차 등의 준수를 위한 업무
4.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발전부문의 필수유지업무
 - 1)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업무
 - 2)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은 제외한다)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
 - 나. 송전·변전 및 배전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 1) 지역 전기공급 업무(무인변전소 순회·점검 업무는 제외한다)
 - 2)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업무

- 3) 배전선 개폐기 및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배전설비의 감시·제어와 배전선로 긴급 계통 전환 업무
- 4)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전력계통원방감시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운영 업무
- 5) 통신보안관제센터 운영 업무
- 6)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 업무
- 7)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업무
- 다. 전력거래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 1)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업무
 - 2) 1주 이내의 단기 전력수요 예측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 등 급전 운영 업무
 - 3) 전력계통 등의 운영을 위한 전산실 운영(출입 보안관리를 포함한다) 업무
- 5. 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은 제외한다)의 필수유지업무
 - 가. 천연가스의 인수(引受),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 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 6. 석유정제사업과 석유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을 포함한다)의 필수유지업무
 - 가. 석유(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 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 7.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 8. 혈액공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 나.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수혈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 업무
 - 다.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 업무
- 9. 한국은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한국은행법」 제6조,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른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업무
 - 나. 「한국은행법」 제4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의 업무
 - 1)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한국은행권 발행 업무
 - 2) 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급준비 업무
 -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지급결제 등의 업무
 -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통신 및 시설보호 업무
 - 라.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임 또는 위탁된 업무
- 10. 통신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업무
 - 나.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업무
 - 다.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우편역무
 - 라.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업무